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11호

「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1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

1. 제정이유

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·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피해장애인 보호·지원(안 제4조)
- 라. 신고 체계 마련 및 시설 점검(안 제5조 및 제6조)
- 마. 점검 인력 확보(안 제7조)
- 바. 교육·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- 사. 비밀 유지의 의무(안 제10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번호: 033-640-4077
- 팩스번호: 033-640-4070
- 전자우편(이메일): hellen8762@korea.kr

붙임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② “장애인 범죄”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.

③ “장애인 거주시설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.

제4조(피해장애인 보호·지원)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.

1. 인권침해·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
2.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·심리상담 등 지원·연계
3.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

제5조(신고 체계 마련)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

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설 점검 등)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강릉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점검 인력 확보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·홍보) ① 시장은 공무원,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,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장애인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, 상담,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, 수사기관, 의료기관, 지원 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비밀 유지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 및 인권침해

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